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보훈예우수당 대상자를 확대하여 수당의 대상이 되지 못한 국가유공자들의 상대적 차별화로 인한 형평성의 결여 및 소외감정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(안 제8조)

· 당초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

· 변경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보훈기본법」”을 “「국가보훈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용어의 정의)”를 “(정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라 함은 다음 각목”을 “란 다음 각 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미시”를 “시”로,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족”을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대상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매 분기별 말”을 “매 분기말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■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보훈번호 :

처리기간

30일

신청인	보훈번호	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(전화번호 :)				

본인 예금 계좌	금 융 기 관 명	예 금 주 성 명	
	계 좌 번 호		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구미시장 귀하

구비서류	수수료
1. 국가보훈대상자증 등 관련증빙 서류 1부 2. 본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없음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, 본인예금계좌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수당지급 자격 소멸 시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훈예우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동의 ☐, 미동의 ☐

■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개 인 정 보 수 집 및 이 용 동 의	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: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사망일자, 전화번호, 본인예금계좌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사망위로금 지급 시 까지 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망위로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	
동의 ☐ , 미동의 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국가보	제1조(목적) 이 조는 「국가보	제1조(목적) ----- 「국가보		
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법	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법	훈 기본법」-----		
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	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	-----		
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	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	-----		
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-----		
목적으로 한다.	목적으로 한다.	-----.		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	제2조(정의) -----		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	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	----- 뜻은 -----		
같다.	같다.	---.		
1.”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다음	1.”희생·공헌자”라 함은 다음	1.-----란 다음 각 목-		
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-----		
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	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	-----		
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	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	-----		
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	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	-----		
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	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	-----		
말한다.	말한다.	----.		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		
2.”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	2.”국가보훈대상자”라 함은 희	2.-----란 -----		
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	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	-----		
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	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	-----		
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	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	-----		
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	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	-----		
다.	다.	-..		
3.”국가보훈관계법령”이라 함은	3.”국가보훈관계법령”이라 함은	3.-----란 -----		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
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
한다.

4.”보훈단체”라 함은 국가보훈
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
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
받아 설립된 구미시 지역을
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시
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미시에
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
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
가보훈대상자 중 「국가유공자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
지의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
13조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
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
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
있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
에서 제외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0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시기) ① ② (생략)

--.

4.-----란 -----

-----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) ① ---
----- 시-----

----- 「국가유공자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
지의 대상자-----

--.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시기) ①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당은 <u>매 분기별 말</u>에 수급 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. 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에 <u>관하여 필요</u>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.	③ ---- <u>매 분기말</u>----- -----. 제16조(시행규칙) ----- - <u>필요</u>----- -----.
--	--

관계법령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
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

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7. 무공수훈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
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
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

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
10. 참전유공자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11. 4·19혁명사망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
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13. 4·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
14. 순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15. 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4조제1항1호부터 제18호까지 확대함에 따라 세출발생(안 제8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466명에서 852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계한다.
- 나.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개정안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2018년 231,600천원을 포함하여 2022년까지 1,218,000천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.

[표1]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추가 재정소요액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보훈예우수당	231,600	237,600	243,600	249,600	255,600	1,218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 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					
도비	일반회계						
	특별회계						
	기금						
시·군비		231,600	237,600	243,600	249,600	255,600	1,218,000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231,600	237,600	243,600	249,600	255,600	1,218,000

5. 부대의견

본 추계결과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의 전입·전출과 사망자가 증·감 될 경우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.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주민복지과 김정선
연락처	054-480-5104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

본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대상 인원이 2018년 386명, 2019년 396명, 2020년 406명, 2021년 416명, 2022년 426명 증가 예상하여 산정하였음.

- 보훈예우수당 산출내역(추가비용)

- 2018년 : 386명 × 월 50,000원 × 12개월 = 231,600,000원
- 2019년 : 396명 × 월 50,000원 × 12개월 = 237,600,000원
- 2020년 : 406명 × 월 50,000원 × 12개월 = 243,600,000원
- 2021년 : 416명 × 월 50,000원 × 12개월 = 249,600,000원
- 2022년 : 426명 × 월 50,000원 × 12개월 = 255,600,000원

소관 실 · 과		주민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백 인 엽
	담 당	이 민 수
	담 당 자	김 정 선 (480-5104)